

핀뱅킹서비스 계약서(외화) 개정 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 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핀뱅킹서비스 계약서(외화)(구하나은행)	핀뱅킹서비스 계약서(외화)	구.행명 삭제
제 1 장 기본사항 (내용생략)	제 1 장 기본사항 (좌 등)	
제 1 조(목적)	제 1 조(목적)	
제 2 조(제공서비스의 종류, 대상계좌의 지정)	제 2 조(제공서비스의 종류, 대상계좌의 지정)	
① “은행”은 “이용기관”에게 아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은행”에 개설된 “이용기관”의 외화계좌간 또는 “이용기관”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급금의 실시간 또는 대량이체 업무 2.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외화정기예금의 신규 개설 및 해지 업무 3.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외화 국내이체 / 국외송금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전송업무 4. “이용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의 거래명세를 일괄 또는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와 잔액조회 및 환율정보 조회 업무 5. “이용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의 거래명세 또는 마감잔액을 해외 지정은행 앞 전송하는 업무 6.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계좌의 성명 조회 업무	① “은행”은 “이용기관”에게 아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은행”에 개설된 “이용기관”의 외화계좌간 또는 “이용기관”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급금의 실시간 또는 대량이체 업무 2.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외화정기예금의 신규 개설 및 해지 업무 3.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외화 국내이체 / 국외송금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전송업무 4. “이용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의 거래명세를 일괄 또는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와 잔액조회 및 환율정보 조회 업무 5. “이용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의 거래명세 또는 마감잔액을 해외 지정은행 앞 전송하는 업무 6.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계좌의 성명 조회 업무 7. “이용기관”이 “은행”과 거래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로부터 수납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대금 등의 자동수납이체 업무 8. “이용기관”과 “은행”이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서에 기록 체결한 업무	구 외환은행 서비스 추가 적용에 따른 문구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②~③항 (내용생략)</p> <p>제 3 조(수수료 등) ~ 제 11 조(전송시간) (내용생략)</p>	<p>②~③항 (좌 등)</p> <p>제 3 조(수수료 등) ~ 제 11 조(전송시간) (좌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실시간 수납이체</p> <p>제 12 조 (실시간수납이체 업무의 범위) <u>“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수납대금을 “은행”에 개설된 “납부자” 계좌에서 즉시 인출하여 “이용기관”의 “모계좌”에 즉시 입금하는 자동계좌이체 업무로 합니다.</u></p> <p>제 13 조 (신청서의 접수 등) <u>자동이체신청서의 접수, 신청내용의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신청명세 전송 등의 업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u> ① “은행”은 “이용기관”이 “이용기관”의 고객(이하 “납부자”)으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을 자동이체신청 직접접수이용기관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반드시 자동계좌이체 약관 동의가 포함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포함)으로 징구하여야 합니다.</p>	<p>구 외환은행 서비스 추가 적용에 따른 조항 신설</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u>“이용기관”이 자동이체 신청을 직접 접수 가능한 경우에는 녹취 등(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금 동의 방법)의 방법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단 자동수납이체 신청자와 예금주의 명의를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u></p> <p>③ <u>이용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하고 이를 보관하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의 원본 및 제 거래내역은 “납부자”가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은행” 또는 “납부자”가 자동이체 동의에 관한 내용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합니다.</u></p> <p>④ <u>“은행”은 “이용기관”로부터 접수한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한 동의여부를 “납부자”에게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은 필요시 신청서 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u></p> <p>⑤ <u>“이용기관”이 직접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u></p> <p>1. <u>“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접수받는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는 사전에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u></p> <p>2. <u>“납부자” 또는 제 3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과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징구)을 첨부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합니다.</u></p> <p>3. <u>“납부자”가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 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이체신청으로 간주하여, 제2호에 준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u></p> <p>4. <u>“이용기관”은 “계좌이동서비스”에 협조하여야 합니다</u></p>	<p>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출금동의방법 추가</p> <p>구 외환은행 서비스 추가 적용에 따른 조항 신설</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⑥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직접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기관코드, 납부자번호, 계좌번호가 기록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에 한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납부자명세서전송 건당 수수료를 "신청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p> <p>⑦ "은행" 또는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신규, 해지, 변경 포함)를 접수처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p> <p>1. "은행" 또는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접수처리한 후 "은행"의 익영업일 영업시간까지 사전 약속된 출금계좌번호, 납부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등의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전송하기로 한다. 단, 실시간 수납이체 이용기관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p> <p>2. "은행"과 "이용기관"은 제 1호에 따라 전송 받은 데이터를 즉시 전산등록하고 처리결과를 당일 정해진 시각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p> <p>3.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자동이체신청명세 중 정상처리명세 및 전산등록 불능명세(계좌번호 오류 등)를 정해진 시각까지 "이용기관"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자동이체 신청등록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p> <p>4. "은행"과 "이용기관"은 데이터의 전송 및 전송결과를 수신하는 쪽에서 확인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p> <p>5. "은행" 또는 "이용기관"이 처리한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 접수처리 업무 및 자동이체처리 불능민원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은 "이용기관"의 대고객 민원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합니다.</p>	<p>구 외환은행 서비스 추가 적용에 따른 조항 신설</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14조 (자동계좌이체 의뢰)</p> <p>① “이용기관”은 별도로 정한 전산처리절차에 따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를 정해진 시각까지 "은행"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p> <p>② "은행"은 수신 완료된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서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동계좌이체 의뢰로 간주하며, 동 명세서는 "은행"의 동의 없이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p> <p>제 15조 (자동계좌이체 처리)</p> <p>“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자동계좌이체의 처리는 다음 절차에 의합니다.</p> <p>① “은행”은 “이용기관”로부터 전송 받은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에 의거 “이용기관”의 이체지정일(실시간 수납이체의 경우 이체 의뢰 즉시)에 출금대상계좌의 지급가능잔액 범위내에서 인출하여 “이용기관”의 모계좌에 이체하고, 별도로 그 처리결과와 자동이체 미등록, 잔액부족 등의 처리불능명세를 전송하기로 합니다.</p> <p>②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가 자동이체 미등록,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도 “신청서”에 따라 실시간수납이체 의뢰건당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니다.</p> <p>③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수납이체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출금일자, 출금회수, 출금금액 등 자동수납이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은 “이용기관”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p> <p>제 16조 (자동이체 변경, 해지)</p>	<p>구 외환은행 서비스 추가 적용에 따른 조항 신설</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① “은행”이 자동이체 등록원장 정리 목적으로 자동이체 등록 자료를 “이용기관”에게 전송하여 자동이체 계속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이용기관”은 협조하여야 합니다.</p> <p>② “납부자” 또는 제3자가 “이용기관”에게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은행”에게 해지 요청한 경우에는 “은행”은 자동이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지 신청 처리하고 해지한 사실을 “이용기관”에게 전송 또는 유선 통지하기로 하며, “이용기관”은 납부자명세전송 건당 수수료를 “신청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p> <p>③ “은행”은 제 2항에 따라 해지 등록한 계좌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수납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하지 않기로 합니다.</p> <p>④ “은행” 또는 “이용기관”은 최종인출요청일로부터 1년간 출금 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기관”은 “은행”에 자동이체의 해지를 요청하고, “은행”은 해당 건을 해지합니다. 2. “은행”은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단, 금융결제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내역은 해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p>제 17조 (모계좌의 인출) “이용기관”은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입금일 익영업일 이후에 인출하기로 합니다.</p> <p>제 18조 (착오 인출 처리) ①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착오(타인계좌 또는 전산오류 등)로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체 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은 착오 인출 내용을</p>	<p>구 외환은행 서비스 추가 적용에 따른 조항 신설</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이용기관”에게 유선 통지하며 “이용기관”은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착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 상당액을 당일 중으로 출금 계좌에 반환하여야 합니다.</p> <p>②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이용기관”의 처리가 지연되어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임의로 “모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 금액을 즉시 인출하여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용기관”에게 유선 통지하기로 합니다.</p> <p>③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직접 자동이체 신청을 받은 계좌에서 착오 인출 사고가 연 3회(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은행”은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신청 접수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p> <p>④ “이용기관”은 “은행”이 제 3항의 착오 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13조에 의거 “이용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p> <p>제 19조 (고지의무)</p> <p>① “이용기관”은 “납부자”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동계좌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또는 확인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p> <p>② “이용기관”은 납기일 또는 납부자번호 등 납부자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③ “이용기관”은 “납부자”가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p> <p>④ “은행”은 “이용기관”이 “납부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이용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p>	<p>구 외환은행 서비스 추가 적용에 따른 조항 신설</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6 장 공통사항 제 12 조(업무처리의 순서) ~ 제 18 조(협의) (내용생략)</p> <p>제 19 조(적용법규) ①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관련내규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u>하나은행</u>), 외환거래기본약관, 대상계좌의 거래약관이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u>하나은행</u>) 등이 적용된다.</p> <p>제 20 조(계약기간) ~ 제 21 조(변경)</p> <p>제 22 조(해지 및 연장) 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23 조(관할법원)~제 24 조(특약사항) (내용생략)</p> <p><u>주식회사 하나은행</u> <u>e-금융사업부장</u></p>	<p>제 7 장 공통사항 제 20 조(업무처리의 순서) ~ 제 26 조(협의) (좌 등)</p> <p>제 27 조(적용법규) ①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관련내규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외환거래기본 약관, 대상계좌의 거래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이 적용됩니다.</p> <p>제 28 조(계약기간) ~ 제 29 조(변경)</p> <p>제 30 조(해지 및 연장) 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요청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p> <p>제 31 조(관할법원)~제 32 조(특약사항) (내용생략)</p> <p><u>주식회사 하나은행</u> <u>미래금융사업부장</u></p>	<p>조항 체하</p> <p>조항 체하 및 구 은행명 삭제</p> <p>조항 체하</p> <p>조항 체하 용어 변경</p> <p>조항 체하</p> <p>변경된 부서명 반영</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